

의안번호	2207455
의 퇴 인	김문수의원
회 답 일	2025.2.4.
추계번호	25D0230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정의)	“청년”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(현행 34세)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함	—
2	부칙 제2조(청년의 연령에 관한 특례)	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적용함 1.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: 19세 이상 35세 이하 2.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: 19세 이상 36세 이하 3.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: 19세 이상 37세 이하 4.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: 19세 이상 38세 이하	—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부칙 제2조(청년의 연령에 관한 특례)	

2. 상세 사유

□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확대(안 제3조)

- 개정안에 따라 청년의 연령 상한을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는 경우 지원대상의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(제7조), 청년 실태조사(제11조), 청년정책 연구사업(제12조),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제13조),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(제14조),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(제15조), 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(제15조의2), 청년정책책임관 지정(제16조), 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(제24조의2),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청년사업 지원(제24조의3),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(제24조의4), 청년 포상(제26조) 등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－ 참고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‘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’ 사업의 2024년 예산은 89억 8,400만원이고, 2025년 예산안은 70억 3,400만원임
- 다만, 청년정책·사업의 내용·범위가 지원 대상 청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, 현행 사업 안에서 충당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
[표]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내역사업: 2025년 예산안

내역사업	2025년
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	7,034
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	219
－ 청년참여 확대 등	1,205
－ 청년의 날 기념 및 주간행사 개최	500
－ 청년정책 연구사업	300
－ 청년정책 홍보	642
－ 시행계획 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·평가	250
－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	2,770
－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	1,148

자료: 국무조정실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